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268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상조업사업’은 항공기유도, 승객탑승 지원, 기내청소 등 항공기 운항 지원사업으로 ‘장비대여’가 사업범위에 포함(제5조제3호)되어 있어, 장비만 대여하는 업체도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로 민간업체의 시장진입이나 공항공사의 장비공유제 등 공적역할 확대에 제약을 초래함에 따라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중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호의 지상조업사업에서 ‘장비대여’를 제외(안 제5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0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36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kkim70@korea.kr

- 팩스 : 044-201-5632(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 - 201 - 4225, 팩스 044-201-5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